

# '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문(안)

○○○ 귀중

우리구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.

'14년 『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』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에 대한 주요 개편사항 및 '15년도 신고·납부와 관련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## 《주요 개편사항》

- 종전 신고·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 왔으나, '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.

종 전 <부가세 방식>	변 경 <독립세 방식>
국세 결정세액 × 부가세율(10%) ⇒ 지방소득세	국세 과세표준×지방소득세율 - 공제·감면 ⇒ 지방소득세

- 소득세,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, 세율, 세액공제·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'지방세 관계법'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.
- 다만, 우선적으로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 사항은 '지방세 관계법'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과세로 전환됩니다.
-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·감면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세액공제·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개인지방소득세(舊 소득세분)은 '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 같이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, '15.1.1.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·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  
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「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안내」책자는 [성동구 홈페이지 http://www.sd.go.kr](http://www.sd.go.kr)에서 다운 가능

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(☎2286-5348)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## 성 동 구 청 장

#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

2014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2014.1.1.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·납부 하셔야 합니다.

## 과세체계 개편

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·법인세의 **부가세 형태**(결정세액의 10%)로 운영되었으나,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·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, 세액공제·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**독립세 형태**로 변경 되었습니다.

- ▶ 과세표준 : 지방세법 규정 적용
- ▶ 세 율 : 지방세법 규정 적용
- ▶ 세액공제·감면 :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
- ▶ 가 산 세 :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 규정 적용
- ▶ 기납부세액 : 지방세법 규정 적용 (단, 중간예납제도 없음)

## 법인지방소득세

[舊 법인세분]

각 사업연도의 소득, 청산소득,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

- ▶ 과세표준이 국세와 같아졌습니다.
- ▶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·감면이 없습니다.
- ▶ 납부 여부와는 별도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- ▶ 10%미만 가감신고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.

## 개인지방소득세

[舊 소득세분]

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

- ▶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국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▶ 다만, 세액은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산출하셔야 합니다.

## 특별징수

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(원천징수세액의 10%)을 유지하되, **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·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**가 추가 되었습니다.

# 2015년

##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

### 시행 시기

201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터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신고·납부 하셔야 합니다.

### 세율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 × 1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
200억원 초과	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

### 신고·납부

확정신고 :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

- ▶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3, 제103조의37(연결법인 5개월 이내)
- ▶ 단, 청산소득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

수정신고 : 국세 신고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·납부  
(세무서 결정·경정 포함)

- ▶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4
- ▶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, 결정·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

### 주요 변경 사항

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됩니다.

- ▶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

1/10 미달시 가감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.

- ▶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/10 미달시에도 발생시마다 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

### 제출 서류

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

- ▶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,
- ▶ 세무조정계산서,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

전자신고·납부 : 이택스(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, [etax.seoul.go.kr](http://etax.seoul.go.kr))와 위택스(지방세 인터넷 신고·납부 시스템, [www.wetax.go.kr](http://www.wetax.go.kr))에 전자신고·납부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, 현재 홈택스와 유사하게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·납부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입니다.

2015년

# 내국법인 이자·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

## 시행 시기

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%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

- ▶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9
- ▶ 내국법인이 이자·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
  - '14.12.31까지 : 법인세만 14%를 원천징수
  - '15. 1월부터 : 법인세 14% + 법인지방소득세 1.4%  
⇒ 총 15.4% 원천·특별징수

## 특별징수의무자

「법인세법」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

## 발생시점

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·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%를 법인지방 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.

## 납세지

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「법인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.

- ▶ 「지방세법」 제89조 참고
- ▶ 단, 개인지방소득세 이자·배당소득 등 납세지와 동일하게 **소득의 지급지**로 개정 추진 중입니다.
  - ※ 「지방세법」 입법예고안('14.9.15) 참고

## 제출 서식

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

- ▶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2호의2 서식
- ▶ 단,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입니다.

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할 예정이며, 또한 위택스([www.wetax.go.kr](http://www.wetax.go.kr))를 통해서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전자신고·납부 : 이택스(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, [etax.seoul.go.kr](http://etax.seoul.go.kr))와 위택스(지방세 인터넷 신고·납부 시스템, [www.wetax.go.kr](http://www.wetax.go.kr))에 전자신고·납부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